

사회보험으로서의 산재보험



원종욱
연세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산재보험 수급 자격

사회보장 제도는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로 나눌 수 있는데,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고,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공부조는 재원 마련 기여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조건이 되는 국민이면 누구에게나 자격이 주어지며, 우리나라 공공부조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가 있다.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에 보험의 원리를 도입한 것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들에게 제공된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이다. 이들 사회보험은 말 그대로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 4개 사회보험의 보험료는 가입자격에 따라 가입자와 사업주나 국가가 1/2씩 부담하거나 가입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하지만 산재보험의 경우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납부하되, 수급자(피보험자)는 노동자다. 또한 노동자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순간부터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으며, 만약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적용 사업장이라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는다.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의학적 치료는 물론이고, 사고로 인한 휴업, 장애, 사망에 대한 종합적인 보상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다른 사회보험과 관련이 있다. 먼저 치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과 중복된다. 산재보험의 요양급여와 건강보험은 서로 배타적이기 때문에 둘 중 어느 하나만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즉 산재노동자는 산재보험에서 요양급여를 받고, 건강보험에서 진료비를 받지 못한다. 문제는 산재 요양 신청을 했는데 아직 산재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나 산재가 종결된 후 그 후 유증으로 진료받으려고 할 때이다.

두 경우 모두 산재보험의 급여를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건강보험에서도 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산재로 승인될 때까지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는 진료비를 전액 부담한 후 산재 승인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 돌려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산재노동자 또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2008년 산재보험법 전면 개정 때부터 산재 승인 이전에 받는 요양은 건강보험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다.¹⁾ 이때부터는 산재 승인 전에는 건강보험으로부터 급여를 받아 본인 부담금만 의료기관에 지불할 수 있게 되었고, 추후 산재가 승인 되면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금을 산재보험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 물론 건강보험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한 요양비는 산재보험에서 건강보험으로 지급한다.

산재 요양 종결 후 발생하는 후유증에 대한 진료와 관련해서는 2015년 산재보험법 개정이 있었다. 산재 종결 후 2년 이내에 산재와 관련된 진료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한 진료비를 산재보험에서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²⁾ 당연히 2년이 지난 후에는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즉, 2015년 이후에 산재노동자는 산재가 종결되어도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금만 지불하고 진료를 받게 되었다. 환자는 진료를 받고, 본인 부담금만 지불하면, 본인 부담금이 이외에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은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이 알아서 정산한다.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급여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및 반환일시금이 있다. 이중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산재보험과 동일 사유로 급여가 발생한다. 즉, 산재 장애급여나 유족급여의 수급자는 동시에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수급자가 될 수 있다. 장해연금과 유족연금을 중복해 수급할 상황이라면, 국민연금에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1/2 감액해서 지급한다.³⁾ 즉, 산재보험의 장해연금을 받는 노동자가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수급 자격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을 전액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장애연금의 1/2만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유족연금도 동일하다. 산재보험과 국민연금은 모두 사회보험으로서, 과잉 보상을 방지하기 위해 급여를 조정하는 것이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08. 7. 1.] [법률 제8694호]. 제42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15. 4. 21.] [법률 제13045호]. 제90조의2

3) 국민연금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8호]. 제113조

산재보험 휴업급여의 경우 65세 이후 취업 중에 산재를 당하면 받게 되는데, 이 경우 노령연금도 동시에 받게 된다. 만일 산재노동자의 상태가 중하여 요양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상병보상연금을 받게 되는데, 역시 65세가 초과되면 노령연금을 같이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 급여가 노령연금과 중복되는 경우는 노령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법에서는 동일한 사유로 타 법(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급여를 받는 경우만 급여의 1/2을 감액한다. 노령연금은 동일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감액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55세에 산재를 당하여 산재 장애연금 받는 사람을 생각해 보자. 이 사람은 2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입하여 당연히 국민연금 수급 자격이 있다. 처음에는 산재보험의 장애연금과 국민연금의 장애연金的 1/2을 받게 된다. 그런데 이 사람이 65세가 되면 국민연금에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때가 되면 국민연금에서는 장애연금과 노령연금 두 가지 중 하나만 받도록 하고 있다.⁴⁾ 이 사람이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이때부터는 산재보험 장애연금과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전액을 받게 된다. 유족연금도 마찬가지이다. 유족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수급 자격이 있으면, 65세 이후에는 유족연금과 노령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산재를 당한 노동자는 치료가 끝난 후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직장에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장애가 심해서 일하지 못하는 경우는 물론이지만 장애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도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30% 정도다.

산재노동자는 산재 요양 종결 후 1개월까지는 해고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고용이 유지되지만, 1개월 이후 해고될 수 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회사 운영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산재노동자 대신 다른 사람을 고용해야 하고, 이 산재노동자는 요양이 끝났을 때는 돌아갈 직장이 없게 된다. 이런 점 때문에 산재노동자 가운데는 산재 요양 중에 퇴직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그렇다면 산재로 인해 해고를 당하거나,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갖춘 산재노동자라고 하더라도 산재 요양급여를 받는 동안은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다만 휴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최대 4년) 실업급여 연기를 신청하여 산재 요양이 종결된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⁵⁾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업무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가장 먼저 분명히 할 것이 있다. 어떤 경우라도 산재보험은 노동자만 보장한다는 점이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가 피해자이든, 가해자이든 업무 수행 중에 사고를 당했다면 산재보험의 보호 대상이다. 두 번째는 자동차보험은 과실을 따지지만, 산재보험은 과실

4) 국민연금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8호]. 제56조

5) 고용보험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29호]

을 따지지 않는다. 내 과실이 50%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보상에 차별은 없다. 물론 산재보험에서는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나 양측 차량의 손실은 관심이 없다.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도 노동자이고, 업무 수행 중이었다면 역시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상 불법행위를 저질러 발생한 사고에 의해 다쳤다면 보상받지 못한다.⁶⁾

또 다른 관점에서 고려할 사항은 보상 방법이다. 불행하게도 부상의 정도가 심해서 치료 후에 장애가 남는다고 할 때 보상 방법이 다르다. 자동차보험은 장애 정도에 따라 일시금으로 보상하는데, 산재보험의 경우 장애 7급 이상이면 보상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의 장애연금은 수급자가 사망할 때까지 평생 지급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시금보다 유리한 조건이다. 특히 산재노동자가 젊을수록 연금을 받는 기간이 연장되고, 장애를 극복하고 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것보다는 유리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업무 수행 중 교통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두 곳에서 보상을 받을 수는 없다. 두 곳에 모두 보상신청을 해도 중복 보상이 되지 않도록 서로 조정한다. 산재보험에서 보상을 하더라도 가해 차량의 자동차보험에 상대 차의 과실 비율만큼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이다. 물론 자동차 사고라는 것이 나만 다치고, 다른 사람이나 자동차 등 물적 사고 없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자로서 나

의 보상을 생각할 때는 산재보험 청구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산재보험과 기타 민간보험

자동차보험 외에도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민간보험이 여러 가지 있다. 대표적으로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에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보장을 해 주고 있다. 산재도 뜻하지 않게 발생하는 손상이나 질병이기 때문에 자신이 가입한 민간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산재보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결론적으로 산재노동자 자신이 가입한 민간보험에서 받는 보험금은 산재보험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과 같이 감액하거나 하지 않고, 자신이 가입한 금액 전체를 다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부 민간보험에서는 산재나 과격한 스포츠는 보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가입한 보험약관의 ‘업무상 재해나 질병은 보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23. 7. 1.] [법률 제18928호]